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2-8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11년도 우편물 송달기준 이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2. 3.

우정사업본부장

2011년도 보통우편물 송달기준 이행률

o 지역별 송달기준 이행률

구 분	평균	동일시·군·구내	동일시·도 내	타시도 내
보통우편	99.54%	100%	99.81%	99.40%